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병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국적을 이탈·상실한 사람 등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실태조사 등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 등을 이동하여 승선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9950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국적 변동 자료의 명시 및 세부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군간부후보생 및 전문연구요원 편입 예정자에 대해 재병역판정검사를 제외하고, 입영·소집 기피 등 병역의무를 기피한 수형자는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를 위한 국적 변동 자료의 종류, 인수 및 관

리 기준 마련(안 제7조)

나. 군간부후보생 및 전문연구요원 편입 예정자의 재병역관정검사 제외

근거 마련(안 제18조의2)

다. 승선근무예비역이 업체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

구제방안 마련 및 이동근무 대상 승선근무예비역의 인권침해 인정 기

준 마련(안 제40조의4 및 제40조의9)

라. 복무이탈 등 사유로 편입 취소된 예술·체육요원의 원신분 복귀 근

거 마련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68조의19)

마. 입영·소집 기피 등 병역의무를 기피한 수형자의 보충역 및 전시근

로역 편입 제외 근거 마련(안 제136조 및 제137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주민등록”을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가족관계등록”으로, “가족관계등록”을 “국적 변동”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및 법원행정처장”을 “행정안전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및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적 변동에 관한 자료”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정보화자료를 말한다.

1. 「국적법」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2. 「국적법」 제12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사람
3. 「국적법」 제14조의3, 제14조의4 및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④ 병무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적 변동 정보화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받아 이를 각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별로 보내야 한다.

제18조의2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외”를 “국외”로,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되었거나”를 “법 제60조제2항 또는”으로, “입영일”을 “징집 · 소집 또는 입영일”로 한다.

5.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6.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미리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제40조의4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3. 제40조의9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⑨ 해운업체등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제4항에 따라 승선근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선박에서 승선근무 하게 된 사람이 승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사실 확인을 하여 승선근무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운업체등의 장은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이 다음 기항 예정 항만 등에서 하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0조의9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④ 법 제23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권침해

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운업체등의 장(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위반 행위에 대해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에서 위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해운업체등의 장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행위에 대해 해양경찰청 등 수사기관에서 위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에 대해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제68조의19제2항 중 “사회복무요원”을 “법 제33조의10제5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33조의10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33조의10제5항제1호”로 한다.

제13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가 목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람(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136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136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2항에서 사회복지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에 편입하지 아니한다.

1.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2.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3.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4. 법 제88조의2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
5. 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제137조제1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36조제8항 각 호에 해당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137조제1항제4호 중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를 “(제136조제8항 각 호에 해당되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6조 및 제137조의 개정규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무이탈로 인한 예술·체육요원의 잔여복무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1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복무이탈 또는 복무의무 위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병역법 위반 사유 수형자 병역감면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3항·제6항·제8항 및 제1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6조,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제88조의2 및 제94조를 위반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①·② (생략) <u><신 설></u>	제7조(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적 변동에 관한 자료”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정보화자료를 말한다.</u> 1. 「국적법」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2. 「국적법」 제12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사람 3. 「국적법」 제14조의3, 제14조의4 및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④ <u>병무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적 변동 정보화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받아 이를 각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별로 보내야 한다.</u>
<u><신 설></u>	⑤·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③·④ (생략)	

⑤ 병무청장은 병역의무의 부과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및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의 범위와 제공방법 등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 등)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재병역판정검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외에 체재(滯在)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유로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되었거나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입영일 등을 연기받은 사람이 그 사유가 없

⑦ -----
-----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가족관계등록 -----
-- 국적 변동 ---- 행정안전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및 법무부장관-----.

제18조의2(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 등)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6.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미리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② -----

-----.

1. 국외-----

----- 법 제60조제2항 또는 -----
----- 징집·소집 또는 입영일 -----

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시한다.

2. 3. (생략)

③ (생략)

제40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①·② (생략)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승선근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을 이동하려는 업체의 배정인원으로 본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1. 2. (생략)

3. 해운업체등의 장(해운업체등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원법」 제129조에 따른 해양항

-----.

2.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40조의9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그 위반 행
위를 신고하여 그 위반 행위
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

4.·5. (생략)

④ ~ ⑧ (생략)

<신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복무관리에 관
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40조의9(승선근무예비역의 실
태조사 등) ① ~ ③ (생략)

4.·5.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⑨ 해운업체등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제4항에 따라 승선
근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선박에서 승선근무 하게 된 사
람이 승선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사실 확인
을 하여 승선근무기간으로 산입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운업체등
의 장은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이
다음 기항 예정 항만 등에서 하
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
다.

⑩ ----- 제9항-----

-----.

제40조의9(승선근무예비역의 실
태조사 등) ① ~ ③ (현행과 같

<신 설>

④ (생 략)

⑤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받아야 할 해운업체등의 장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음)

④ 법 제23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운업체등의 장(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위반 행위에 대해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에서 위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해운업체등의 장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행위에 대해 해양경찰청 등 수사기관에서 위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에 대해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제5항-----

-----.

⑥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생략)

⑧ 제7항에 따른 해운업체등의 평가 방법 및 기준, 우수 해운업체등에 대한 우대 등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68조의19(복무이탈로 인한 예술

· 체육요원의 잔여복무) ① (생략)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발된 예술·체육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예술·체육요원에 대해서는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법 제33조의10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

⑦ ----- 제5항-

-----.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⑨ 제8항-----

-----.

제68조의19(복무이탈로 인한 예술

· 체육요원의 잔여복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법 제33조의10제5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

나 사회복무요원-----.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3조의10제5항제1호--

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복무기간을 말하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복무한 일수를 계산할 때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한 1개월마다 16시간을 공익복무를 해야 할 시간으로 산정하여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16시간(미달 시간 계산 시 8시간 이상은 16시간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마다 1개월을 복무한 일수에서 공제한다.

1.·2. (생략)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과 대체역으로서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할 수 있는 사람

-----.

-----.

1.·2. (현행과 같음)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① -----

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적용하고,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하여 각 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1. 보충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가.·나. (생략)

2.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

-----.

-----.

1. -----

-- <단서 삭제>

가.·나. (현행과 같음)

2. -----

가. -----

은 사람. 다만, 법 제86조
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
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
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
은 사람은 제외한다.

나. ~ 바. (생략)

3. (생략)

②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받은 사람(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나 법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호·제3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복무기관의 장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역처분변경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5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 <단서 삭제>

나. ~ 바.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사람

③ 보충역으로서 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의 병 중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6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 ⑤ (생략)

⑥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⑦ (생략)
<신설>

③ -----

-----.

다만,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다만,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2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
람으로서 징역 또는 금고의 형
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징
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보충
역이나 전시근로역에 편입하지

	<u>아니한다.</u> 1. <u>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u> 2. <u>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u> 3. <u>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u> 4. <u>법 제88조의2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u> 5. <u>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u>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① 법 제65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① ----- ----- -----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병역처분
변경은 각 군 참모총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이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
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형법」 제37
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하여 각
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 또는 금
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징
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
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1. (생 략)

2.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
만,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
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
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
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
은 사람은 제외한다.

3. 삭 제

4.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
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법

-----.

-----.

1. (현행과 같음)

2. -----

-----.
다
만, 제136조제8항 각 호에 해
당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
람은 제외한다.

4. -----

------(제1

<u>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 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은 제외한다)과 제136조제1항 제2호나목부터 바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방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 입할 수 있다.</u> 5. ~ 6. (생략) ② ~ ⑦ (생략)	<u>36조제8항 각 호에 해당되어</u> ----- ----- ----- ----- ----- ----- ----- -----. 5.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2) 481 - 2677